



전라북도교육청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학원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률 등 개정 알림

1. 관련: 학교안전총괄과-2898(2020.6.19.)
2.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령이 개정·공포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,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대상 학원에서 개정 법령을 숙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.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공포('20.5.26.) [붙임 1]
 -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 확대(제2조 제23호)
 -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·보관·제출 의무화(제53조 제7항)
 - 어린이통학버스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(제53조의3)
 -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의무 관련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(제53조의4 제1·2항)
 -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위반 시 제재를 강화(제154조, 제160조 제1항 제8호)
 -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(제53조 제6항, 제154조 제3의2호)
 -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운전자에게 하차확인 의무 신설(제53조의5)
 - 나. 「교통안전법」 개정 공포('20.6.9.) [붙임 2]
 - 어린이통학버스에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(제55조 제1항 제3호)
 -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교통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비용 지원 등 근거 마련(제9조 제2항 제3호)

- 붙임 1. 「도로교통법」 개정 관련자료 1부.
 2. 「교통안전법」 개정 관련자료 1부. 끝.

전라북도교육감



수신자 교육지원청교육장

★주무관	황신애	평생교육담당 사무관	이상곤	미래인재과장	전결 2020.07.22. 변완섭
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미래인재과-13490 (2020. 7. 22.) 접수 교육지원과-15323 (2020. 7. 22.)

우 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/ <http://jbe.go.kr>

전화 063-239-3442 /전송 063-220-9412 /maridboa@jbedu.kr / 공개